

墓所管理規定

宗教法人 在日大韓基督教会東京教会

第 1 章 墓所管理

第 1 條 東京教会(以下教会라고 함)는 墓所를 富士靈園에 設置했다.

이 管理運營은 納骨堂委員會가 맡는다.

第 2 條 墓所管理의 必要에 關한 經費(修理, 修善)은 墓所管理特別會計를 두고 管理한다.

第 2 章 墓所使用의 條件

制 3 條 教会納骨堂에 納骨한 者는 納骨委員會에 申請하여 承認을 받아야 한다.

第 4 條 墓所는 下記에 該當하는 遺骨을 安置한다.

1. 教會員으로써 在籍한 者
2. 教會員의 兩親, 配偶者, 子女, 兄弟등으로서 教會員이 遺骨保存의 責任이 있는 경우.
3. 關東地方會所屬教會員또는 他教會員으로 그 在籍教會의 担任牧師로부터 依頼가 있을 경우.

단, 教會員이외의 者도 一時的으로 保管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.

第 5 條 納骨堂에 納骨한 者는 遺骨이 無緣이 되지 않도록 貴族代表者는 納骨堂委員會에 申告해야 한다. 住所가 變更되었을 때는 速히 變更內容을 當委員會에 提出해야 한다.

第 6 條 遺骨은 大, 中, 小, 로 나뉘며 中(大人), 小(小人)만이 納骨할 수 있다.

第 3 章 墓所納骨의 經費와 管理

第 7 條 納骨하는 者는 下記의 費用을 東京教会納骨堂會計에 納入해야 한다.

1. 永代納骨(1 회에 限함) 納骨負擔金은 20 万円으로 하고 수시로 調整이 可能하기도 하다.

第 8 條 教會員과 그 家族이 經濟的 余裕가 없어서 負擔金을 지불할 수 없을 경우 그 一部를 免除하고 □足額은 所屬教會가 負擔하는 것으로 한다.

第 9 條 墓所管理特別會計의 年度는, 教会一般會計年度에 準한다. 決算報告와 教会 同會議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.